

2019년 개안수술비 지원안내 (10~59세)

□ 지원질환

백내장, 망막질환, 녹내장,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 (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)

※ 일부 비급여 수술에 한하여, 연령 제한이 있을 수 있음

□ 접수 대상 및 기준

- 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- ②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
- 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
□ 구비서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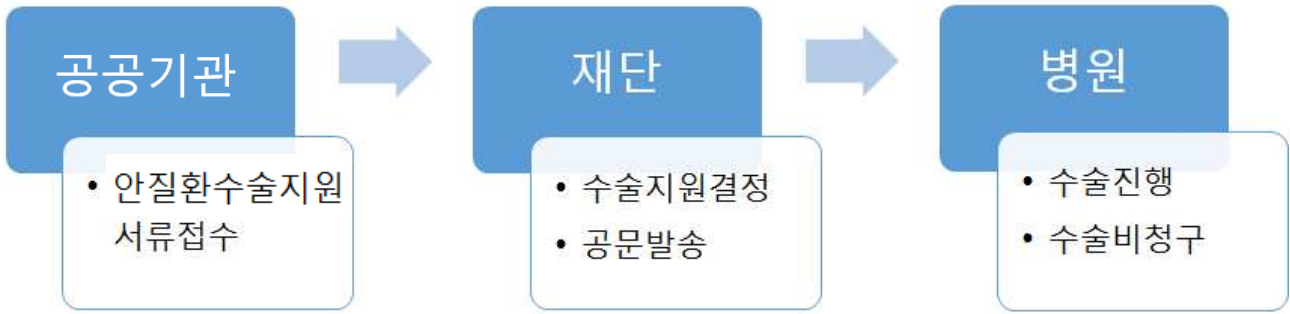
- ① 안질환 의료지원 신청서 [제1호서식]
 - ②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[제2호서식]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17조에 근거
 - ③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(수술명 기재, 수술병원 양식) 1부
 - ④ 기초생활수급자 · 차상위계층 ·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
 - ⑤ 만 18세 미만인 경우 자유로운 양식의 그림 및 편지 원본
- ※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- ※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
- ※ 신청기관의 관인(직인)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

□ 신청방법

-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접수, 대상자가 안질환의료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또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발굴하여 신청 가능
- ② 응급 수술인 경우 병원의 사회사업실 등의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 가능
- ③ 신청자 : 본인,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, 담당 공무원

접수처에서는 본 안내문을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지원절차



- ① 접수에서 지원까지 약 1개월 소요(응급 수술의 경우 별도) 예산 상황에 따라 소요기간 달라질 수 있음
- ②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결과 통보
 - ※ 안질환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
 - ※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
 - ※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

□ 지원범위

- ① 신청 질환과 관련한 수술비 및 사전검사비(혈액·소변·심전도·눈초음파 등)
- ② 아바스틴 · 루센티스 · 아일리아 ·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간 사전검사 1회, 주사 2회
 - ※ 단, 아바스틴 주입술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승인병원, 루센티스 · 아일리아 · 마카이드 주입술의 경우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자로서 진단서에 기재된 경우
- ③ 후발성백내장 · 망막 · 녹내장 레이저 치료비 : 급여 공단부담금으로 청구 가능한 경우

□ 지원제외

- ①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
- ② 간병비, 상급병실료,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
- ③ 통원진료비
- ④ 특수렌즈(난시교정·다초점·조절성 인공수정체 등)
- ⑤ 안과 외 다른 진료과에서 발생한 의료비
- ⑥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및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
- ⑦ 의료기관 입원 중 또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
 - 예)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수술을 받는 경우

개인정보 보호법

[타법개정 2017. 7. 26 법률 제14839호]

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2.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3.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4.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
5.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6.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.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.

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1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2.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
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

제17조(개인정보의 제공)

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(공유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할 수 있다.

1.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
 2. 제15조제1항제2호·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
1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
 2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
 3.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
 4.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
 5.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
-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.